

#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2022. 4.1. ~ 6.30.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보과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보과 Tel. (044)200-6574, 6582

## 심사방식

- 1차 : 서류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 선정
- 2차 : 경진대회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 결정(장려상 이상)
-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에 따라 일정, 방식 등 변경 가능
-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 가능

##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전문가 평가(80%) :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전달력(경진대회 개최 시)
- 국민 선호도 평가(20%) :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2022. 10월 중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경진대회 및 시상식**  
2022. 11. 16.(예정)

※ 위 일정 및 경진대회 방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를 찾습니다

2021년 7월,  
지방보조금  
법령 시행!



잘 알고  
사용해야겠다!

부정 수급 하면  
반환·제재금 내고  
벌칙까지 받는거야

## 지방보조금 어떻게 달라졌나요?

- 중요재산 부기등기
- 감사인 검증 및 회계감사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제재부가금  
**다섯 배!**

부정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 등  
(지방보조금법 제35조)

##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  
(지방보조금법 제34조 등)

###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없이 처분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
- 해당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내용 변경 등

신고절차 문의 (국번없이) ☎110  
 신고관련 안내 (국번없이) ☎1398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검색

(21.12월 말 오피예정)~!

발 간 등 록 번 호

78-6460000-000457-06

1000 천년을 품다. 새민년을 보다  
전라도천년

내 삶이  
타락하는  
전남  
행복시대

2022년 6월(제356호)

생활에 유익한

# 법무상식



전라남도  
JeollaNamdo



# Contents

## I

### 새로운 판례

1. 시정명령등취소 ..... 7
2. 근로기준법위반 ..... 9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11
4. 강제추행 ..... 13
5. 이혼 등 ..... 15

## II

### 법령해석사례(법제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 ..... 17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등 ..... 20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 22
4.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 25
5.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 ..... 28
6.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 30

## III

### 행정심판 재결사례

1. 개인모지 설치 신고 불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 ..... 33
2.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 사전통고 취소청구 ..... 39

## IV

### 생활법률 상담사례

1.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 47
2. 공무원이 검직허가를 받으면, 유튜브 채널에서 직·간접광고를 해도 되나요? ..... 49
3. 1인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50
4.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 넣고 싶은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1

5.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 표시를 하고 싶는데 어떻게 표시해야 광고 논란이 없을까요? .....	52
6.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광고 문구를 잘못 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54
7.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	55
8. 아동·청소년 대상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 시,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	56

## V

### 법무단신

1. 가장훈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	57
2.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죄 안돼” .....	59
3. 범의의 단일성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	60
4.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	62
5. “토요근무 거부’ 집배원 감봉처분 부당” .....	64
6.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	66
7.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	68
8.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	70

## VI

### 최근 제정·개정 시행법령

· 자동차관리법 .....	72
----------------	----

## VII

###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 가구 지원 .....	78
· Support for multi-child households .....	83
· 对于多子女家庭的支援 .....	89
· Hỗ trợ gia đình đông con .....	93

## VIII

### 법제처 법나들이

· 사장은 어려워 .....	99
-----------------	----

# I

## 새로운 판례



1

시정명령등취소

\* 대법원 2019두57398

[과징금산정의 잘못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계약금을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고(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등 참조),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에서 위반행위 관련 실제 매출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으로서, 문언이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에 있어 입찰담합 참여자 중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입찰담합이 무위로 돌아가 참여자들 가운데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참여자들이 입찰담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에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찰담합 행위 그 자체의 위법성에 걸맞게 제재 수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행정제재 목적 달성의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 된다.

입찰담합 참여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부과 기준을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입찰담합이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를 가리지 않고 그 입찰의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과잉환수 내지 과잉제재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

- ☞ 원고 등이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 담합을 하였으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과징금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2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2도2188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곧바로 소정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 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피고인이 강사들의 급여에 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자율권 부여 등을 들어 개인사업자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약금 조항에 기하여 퇴직 전 마지막 달 급여를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

자로 인식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약금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상계처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약금 조항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8도13864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위계’의 의미, 3.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여기서 말하는 ‘증권의 매수 추천’의 의미, 5. 어떠한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에 해당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인지 또는 위계의 사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뜻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

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투자자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참조). 여기서 ‘증권의 매수를 추천’한다고 함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하여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어떠한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에 해당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인지 또는 위계의 사용인지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한 것인지,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행위자가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참조).

- ☞ ○○경제TV 방송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사전에 매수해 둔 특정 증권을 방송에서 추천한 후 주가 상승 시에 보유하던 증권 전량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스캘핑 행위’를 하여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안임
- ☞ 원심은, 피고인이 ○○경제TV 방송 시청자에게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제TV 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종목과 관련하여 소개한 내용이나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위 종목의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그 종목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소개하여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즉 증권의 매수 추천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 4

## 강제추행

\* 대법원 2017도11582

[증인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궁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의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궁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 ☞ 내과 레지던트 2년 차 의사인 피고인이 직장 수지검사를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임
- ☞ 제1심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제1심 법정에서 이르는 동안 피고인이 고의로 질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고 단정하는 방향으로 점점 묘사가 풍부해졌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신문을 거쳐 심리를 마친 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여 쟁점 진술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 5

## 이혼 등

\* 대법원 2021므15480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가.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6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해외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외 출국을 한 것 외에도 잦은 해외 출국을 하면서 원고에게 체류사유 및 사업 추진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들인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않은 채 원고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II

##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 사례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주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제1호)은 생활폐기물(제2호)과 사업장폐기물(제3호)로 구분되는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일반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이하 같음)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압축·파쇄·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이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폐기물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하 “잔여폐기물”이라 함)은 관할 시장등이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 중 재활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대행하는 자(이하 “재활용업자”라 함)(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잔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업장이 해당 생활폐기물 배출구역의 시장

등이 관할하는 구역이 아닌 다른 시장등이 관할하는 구역에 위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라 해당 잔여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관할 시장등”은 생활폐기물 배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하는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하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관할 시장등”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합니다.



## 이 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서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잔여폐기물”은 “관할 시장등”이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관할 시장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시장등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활용업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 대행자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의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활용업자가 생활폐기물 배출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생활폐기물을 분리·선별·압축·파쇄·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폐기물은 당초의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재활용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업장폐기물인 잔여폐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잔여폐기물에 대해 관할 시장등이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 잔여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활용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18. 4. 13. 환경부령 제 7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4. 13. 시행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및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의 “관할 시장등”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관할 시장등”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합니다.

## 사례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등(「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각주: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해당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 이 유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본문에서는 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각주: 2010. 7. 26. 의안번호 제1808948호로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인바, 법령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없이,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때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상담·치료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발언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분쟁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취지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은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 사례3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근로자(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함)을 유급(有給)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각주: 비번일, 무급휴일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과 겹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각주: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바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노사간 특약이 없거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



### 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공휴일등이 근로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공휴일등을 “유급(有給)”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급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 73277 판결례 참조), 같은 항 단서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해당 공휴일등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같은 법이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공휴일등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휴일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서 및 2016. 7. 11. 의안번호 2000804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의 규정인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본문은 공휴일등이 근로자의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하되, 근무했다면 발생했을 임금도 함께 보장하여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근무가 없는 날은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도 없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거나 임금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도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만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공휴일등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휴일등이 근로일과 겹치는 근로자만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어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근무가 없는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경우 오히려 공휴일등과 특정 근로자의 근무가 없는 날이 겹친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해당 근로자만 추가 임금을 받게 되어 근로자간의 임금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도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례4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8228;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각주: 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이하 같음)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로 한정되는지?

## 회 답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 유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제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함)의 부과 대상

제품·재료·용기 중에서 사업자가 회수·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을 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각주: 2011. 9. 26. 의안번호 제1813264호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만약 같은 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로만 한정된다고 본다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재료·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제품·재료·용기를 회수·재활용할 유인이 없게 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를 신설할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같은 법 개정안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되는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범위가 가변적이어서 발생하는 집행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로 수정(각주: 2011. 12.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이유 참조)하고, 이에 더하여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를 추가하여 규정한 것인바, 같은 호는 “일정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를 각각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규정(각주: 2012. 2. 1. 법률 제1126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것(각주: 2011. 9. 26. 의안번호 제1813264호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을 이행하는 경우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게 되므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라면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사례5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각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어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 중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 그 최다득표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최다득표자 1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라목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한 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추첨을 통한 선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의 최다득표자 1인이 회장으로 선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 추첨에 의해 선출할 수 있도록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66호로 같은 영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내용이 신설되기 전에는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하도록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규정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의 회장선출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임의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아닌 최다득표자 1인을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 그 최다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이고 최다득표자가 1인이기만 하면 과반수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같은 목의 문언의 의미가 형해화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최다득표자 1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 사례6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시설(각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의 설치를 위해 농지(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제함)를 사용하려는 경우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이 유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47 해석례 참조).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농지”란 같은 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같은 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축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는 농지를 같은



조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 즉 축사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3호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농지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령에 따른 “축사”와 “간이양축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14835호로 제정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축사”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을 구분하면서 두 시설 모두를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각주: 1994. 12. 22. 법률 제14835호로 제정된 「농지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1 제3호 참조)하고 있었으나,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지에 설치한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정의하여 축사의 부지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부지는 종전과 같이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지하여, 그 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체계를 유지(각주: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3호 참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농지법」의 규정 체계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친환경적인 농축산업의 육성과 원활한 축사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각주: 2006. 3. 13. 의안번호 제172726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축사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은 간이양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해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축사육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에 따라 농지에 어떠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3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사”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각종 형태의 가축사육시설의 부지로 농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마저 거치지 않게 되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0. 7. 13. 회신 20-0172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 III

## 행정심판 재결사례



### 개인묘지 설치 신고 불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22. 청구인에게 한 개인묘지 설치 신고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수리하라.

####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 7. 15.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에 개인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7. 22. 청구인의 이 사건 묘지 설치신고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0. 11.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22. 청구인에게 한 개인묘지 설치 신고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수리하라.

#### 3. 당사자 주장 요지

##### 가. 청구인

-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근거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별표2]의 설치기준에 따른 거리 제한 위반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서 조항에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리 제한과 관계없이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장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묘지 설치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2) 위의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의 상황 즉, 지형의 형태에 의한 능고, 차폐시설 등으로 묘지 예정지가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

- 3) 이 사건 묘지는 산모퉁이를 돌아서 등선을 넘어서 있는 곳으로 등선 높이가 5~6m 이상이므로 도로에서 사람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며, 이 사건 묘지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마을은 17호 이내의 마을로 인가밀집지역이 아니고, 따라서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이 300m 이내에 없으므로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한 곳이다.
- 4)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1-가에 따르면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묘지가 10cm를 초과하여 조성된 것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묘지 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묘지 설치신고가 수리될 경우, 기초(기반)석까지 흙(마사)을 채우고 잔디를 심어 50cm 이하의 평분규정에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다.
- 5) 가시권 문제는 수고 1m 이상의 상록 조경수를 울타리식으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묘지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다.

#### 나. 피청구인

- 1)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1-라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며, 1)「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또는 200m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을 규정하고 있다.
- 2) 법률이 정하는 거리의 기준은 위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단서 조항의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과 2)의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 3)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장사업무 안내'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은 한마을 전체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동, 리 등 행정구역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역의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의 형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2020. 11.말 기준 \*\*리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98세대(\*\*마을 29, \*\*\*마을 23, \*\*\*\*마을 46)이며, 이 사건 묘지는 \*\*마을과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 4) 따라서 이 사건 묘지는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1)의 「도로법」제2조의 도로로부터 49m 떨어져 있으므로, 200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가시권 내에 위치한 곳이다. 또한 이 사건 묘지로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



역인 \*\*마을, \*\*마을, \*\*\*마을이 위치하므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2)의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가시권 내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 5)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1-가에 따르면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기준을 살펴볼 때, 봉분의 높이는 지면이라는 기준점을 제시하지만 평분을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평분은 설치된 봉분의 높이가 50cm 이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과한 평분의 높이 10cm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인 주장대로 기초(기반)석까지 흙(마사)을 채우고 잔디를 심는다고 하여 평분 규정에 적합한 조치가 되지 않는다.

#### 4. 관계 법령

- 1) 장사법 제14조
- 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 4) 「행정심판법」제27조

#### 5. 판단

#####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및 현장 검증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20. 7. 15.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에 이 사건 묘지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2) 피청구인은 2020. 7. 17. 현장확인을 하였고, 2020.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3) 청구인은 2020. 8.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4) 피청구인은 2020.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였다.
  - 5) 청구인은 2020. 11.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이 사건 청구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 법령

- 가) 장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1-가에 따르면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1-라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또는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판단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며, 2020. 7. 2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2020. 11. 25.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에 따르면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취지의 기각 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민원처리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는 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20. 7. 22.로부터 180일 이내인 2020. 11. 25. 청구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함을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묘지는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설치기준-1-라의 단서 조항의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장사업무 안내’에 따르면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의 상황 즉, 지형의 형태에 의한 능고, 차폐시설 등으로 묘지 예정지가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및 시장등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묘지가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라고 인정하지 않은 점, 2021. 1. 5. 현장 검증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설치기준-1-라의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묘지는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설치기준-1-라의 본문 조항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장사업무 안내’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은 한마을 전체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동, 리 등 행정구역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역의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의 형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20호는 일종의 기

준이고 단순히 수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및 2021. 1. 5. 현장 검증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묘지로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인 \*\*마을, \*\*마을, \*\*\*마을이 위치하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묘지로부터 200m 이내에 「도로법」 제2조의 도로가 위치하므로 이 사건 묘지가 개인묘지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묘지가 개인묘지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이상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1-가의 평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 사전통고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9. 청구인에게 한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 사전통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답 1,62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4. 14. \*\*시 \*\*면 \*\*리 \*\*-\* 소재 구 \*\*상사(전기\*\*매트 생산)를 운영한 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임대차 기간 2015. 4. 14. ~ 2018. 4. 14., 차임 총180만 원)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이하 ‘이 사건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 한다)이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6. 6. 2. 현장 확인 후 2016. 6. 9.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적법 처리 조치명령을 하였고, 2016. 9. 23.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김○○에게도 폐기물 적법 처리 조치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2017. 4. 21. 김○○에게 폐기물 적법 처리 조치명령을, 2019. 9. 19., 2019. 12. 9. 청구인에게 폐기물 적법 처리 조치명령과 이행을 촉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게, 2020. 4. 10. 김○○에게 각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였고, 2020. 6. 15. 청구인과 김○○에게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하였으며, 2020. 7. ~ 8.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대집행’이라 한다) 실행을 완료 한 후 2020. 9. 9. 김○○에게는 행정대집행 비용(131,215,140원) 납부명령을, 청구인에게는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70,856,180원) 사전통고(이하 ‘이 사건 구상권 청구 사전통고’라 한다)하였고, 2020. 10. 19.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비용(70,856,180원) 납부명령하였다.

청구인은 2020. 12. 4. 이 사건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는 이를 발생시킨 김○○에게 있으므로 김○○에게 처리를 명하고 그 처리 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김○○에게 비용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구상권 청구 사전통

고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9. 청구인에게 한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 사전통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3. 당사자 주장 요지

### 가. 청구인

-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김○○는 이 사건 토지에 방치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내 폐기물은 김○○가 청구인 몰래 방치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김○○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하고 김○○로부터 그 처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3)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김○○가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후 김○○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하고, 행위자가 위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불능상태일 경우 청구인에게 징수하게 된다고 사전통고하였으나, 이는 김○○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비용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 4) 한편, 청구인은 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지원(20\*\*가단8\*\*\*\*97호)에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이는 확정되었다.
-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직접 폐기물을 방치한 책임자인 김○○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하고 김○○로부터 그 처리 비용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 사전통고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청구인

- 1)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할 수 있다. 청구인 몰래 행위자가 폐기물을 방치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위자 김○○에게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납부 절차를 이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의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 완료 후 행위자 김○○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전달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 사전통고를 하였다. 이는 불법 방치폐기물을 적치한 1차적 책임자인 김○○에게 우선적으로 비용 납부 명령을 하였고, 토지소유자 또한 법적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사전 통고한 것으로, 행위자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 3)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와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 4) 또한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회피 근절 및 비용 회수 가이드라인(2019. 12.)」에 따라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대상자(행위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든 의무대상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납부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구상권 청구 사전통고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5) 따라서 이 사건 구상권 청구 사전통고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관계 법령

-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2)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제48조, 제49조
- 3)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5조
- 4)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5. 판단

#####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답 1,62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4. 14. \*\*시 \*\*면 \*\*리 \*\*-\* 소재 구 \*\*상사(전기\*\*매트 생산)를 운영한 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2015. 4. 14. ~ 2018. 4. 14., 차임 총 180만원)을 체결하였다.
-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이하 '이 사건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 한다)이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6. 6. 2. 현장을 확인한 바,

이 사건 토지, 인접 토지(\*\*면 \*\*리 \*\*-\*번지, 김△△ 소유), 김○○가 운영한 공장 부지(\*\*면 \*\*리 \*\*-\* , \*\*-\* , \*\*-\*번지)에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100여톤 추정)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 3) 피청구인은 2016. 6. 9.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적법 처리 조치명령하였다.
- 4) 피청구인은 2016. 9. 23.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김○○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적법 처리 조치명령을 하였다.
- 5) 피청구인은 2017. 4. 21. 김○○에게 재차 폐기물 적법 처리 조치명령하였다.
- 6) 피청구인은 2019. 5. 10. 청구인과 김△△에게 방치폐기물을 2019. 6. 20.까지 자진 처리하도록 통지하면서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명령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 7) 피청구인은 2019. 9. 19. 청구인과 김△△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방치폐기물 처리 및 청결관리)하였다.
- 8) 피청구인은 2019. 12. 9. 청구인과 김△△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촉구하였다.
- 9)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과 김△△에게 행정대집행 계고하였다.
- 10) 피청구인은 2020. 4. 10. 김○○에게 행정대집행 계고하였다.
- 11) 피청구인은 2020. 6. 15. 청구인, 김△△, 김○○에게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하였다.
- 12) 피청구인은 2020. 7. ~ 8. 행정대집행을 완료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9. 김○○에게 행정대집행 비용(131,215,140원) 납부명령하였다.
- 13) 피청구인은 2020. 9. 9. 청구인과 김△△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각 70,856,180원, 60,358,960원) 사전통고(이하 '이 사건 구상권 청구 사전통고'라 한다)하였다.

○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 사전 통고(요지)

- 행정대집행 비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림, 행위자(김○○)에게 2020. 10. 16.까지 납부토록 명령하였음
- 행위자가 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납부 불능 상태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 제4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바, 행정대집행 소요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도 납부 명령하게 됨
- 또한, 원인자(행위자와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른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7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대집행 방법: 용역 위탁처리(수거·처리업체: \*\*\*\*\*)
-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 예정 내역

토지소유자	주소	소유 토지	청구금액
오**(청구인)	생략	**면 **리 ***	70,856,180원
김△△	생략	**면 **리 **-*	60,358,960원
합계			131,215,140원

- 15) 피청구인은 2020. 10. 19. 김○○에게 행정대집행 비용(131,215,140원) 납부 독촉하였다.
- 16) 피청구인은 2020. 10. 19. 청구인과 김△△에게 행정대집행 비용(각 70,856,180원, 60,358,960원) 납부명령하였다.
- 17) 피청구인은 2020. 12. 1. 청구인과 김△△에게 행정대집행 비용(각 70,856,180원, 60,358,960원) 납부 독촉하였다.
- 18) 청구인은 2020. 12. 4. 이 사건 구상권 청구 사전통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관계 법령

<b>행정심판법</b>
<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b>제3조(행정심판의 대상)</b>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b>폐기물관리법</b>
<b>제7조(국민의 책무)</b>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한 계획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 등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IV

## 생활법률 상담사례



1

인터넷 개인방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 이에 해당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세요.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합니다

※ 그 밖에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을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세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이라서 회사에 겸직허가를 받고 취미활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 상품 광고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겸직허가를 받으면, 직·간접광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3

1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고 편집자도 고용하고 스튜디오도 임대하는 등 준비를 끝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도 하려고 하는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고용하고 스튜디오와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었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할 때 과세·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인적고용으로는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 물적시설로는 전문적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물적 시설의 범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4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콘텐츠에 넣고 싶은 멋진 사진이 있는데, 저작자권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을 신청하세요.

- ☞ “법정허락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 저작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https://www.findcopyright.or.kr>)> 를 이용하시면 저작권자 조회 및 법정허락 승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화장품 협찬을 받아 콘텐츠에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뒷광고 논란으로 광고 표시가 엄격해졌다고 해서요.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시해야 광고 논란이 없을까요?

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콘텐츠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광고 표시를 하려면 광고 문구가 제목에 생략되지 않도록 표시, 영상 내에 표시, 배너 등을 통해 영상 위에 표시 등 소비자가 쉽게 보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 동영상에서 광고를 표시 하는 경우

☞ 동영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에서의 추천·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광고 표시 방법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광고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광고 표시 일반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합니다.
-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솔직 리뷰'라고 입력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 사용 후기만을 위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예시)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6

제가 운영하는 뷰티 관련 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상품 협찬, 무료 제공, 무료 대여, 할인혜택 등 관련 지원이 많은데요. 가끔 상품별로 협찬인지 무료 제공인지 할인혜택인지 헷갈려 광고 표시가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만약 광고 문구를 잘못 표시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따라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은 광고에 대한 관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표시·광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의 여부 및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 임시중지 명령: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주간 이슈를 주제로 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뉴스의 당사자들은 해당 콘텐츠로 인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가 뉴스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사이버명예훼손죄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형법」상 명예훼손죄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다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8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위해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 행위 유형

-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를 노출되는 행위

# V

## 법무단신



1

###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가장(假裝) 결혼을 통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다음 여권을 발급받고 출입국한 때에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되는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불실기재 여권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177).

조선족 여성인 A씨는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B씨라는 위장 신분을 만들어 1995년 10월 한국 남성과 가장 혼인해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B 명의로 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2년 12월 중국인 C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B라는 신분을 이용해 구청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97년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국적법 제3조 1호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정 취득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한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입국해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구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해 출입국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 행사와 여권없이 출입국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239).

조선족 여성인 D씨는 1997년 10월 중국에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마을 이웃인 E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인적사항을 빌린 뒤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 남성 F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장 결혼해 E씨 인적사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에 거주했다. D씨는 2008년 12월 E명의로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총 6회 출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2

##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죄 안돼”

나이와 거주지, 직장 등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코로나19 확진자 보고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사적으로 보낸 공무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654).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청 공무원인 A씨 등 4명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접촉자의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촬영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고 이들의 인적사항이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 유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A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사는 무죄 판결이 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3

## 범의 단일성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범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375). 함께 기소된 B씨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이 다른 사기사건 경합범으로

추가 분리 기소

공소장 변경없이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하면 안돼

여행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을 소개하면서 원금 손실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하라고 속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7차례에 걸쳐 14억3900여만원을 받아 채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또 직원들과 함께 태국 리조트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1년 10월부터 한달여간 1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로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9차례에 걸쳐 30억386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1차 기소한 뒤 종전 기소된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가 포함돼 있지만 범행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 범죄인 형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10년 원심파기

2심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A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추가 기소된 부분을 종전 기소 부분과 합쳐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취하고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편취한 것과 관련해 검사가 형법 제347조 1항,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해 형법상 사기죄의 실제적 경합범으로 기소했음에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라고 보고 직권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다”면서 “단일 범의에 의해 상대방을 기망해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해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사기행위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만, 각 사기행위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사기행위가 전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347조 1항을 적용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4

##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 등을 앞둔 근로자들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하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다2923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 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1955년생)는 2011년 부터 적용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의 기본 급을 지급받았다”며 “B연구원의 성과연급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를 위반 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연구원의 성과연급제는 A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 효”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이 강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B연구 원의 임금피크제가 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사업주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내용 및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 을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 면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 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연구원의 성과연급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했는데 (이 목적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업무 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연령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에 진행 중인 사건 관련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의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6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의 27.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46.8%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 “토요근무 거부’ 집배원 감봉처분 부당”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한 집배원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요근무 명령 자체가 단체협약 내용에 저촉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3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우정주사보로 승진해 서울중앙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A씨가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전국우정노조는 2018년 11월 체결한 우정단체협약에 조합원 동의가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토요일 근무를 명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명령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더라도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토요일 등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우체국장은 우정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동의 없이 A씨에게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근무명령을 했고,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토요일 근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근무명령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단체협약 내용에 저촉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근무명령이 적법·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A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6

##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335).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쳐 1명을 사망케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달 26일 현행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다(2021헌가32).

대법원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헌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



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7

##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라도 자주 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9다2494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C씨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내용으로 C씨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 C씨는 이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4월 18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이때부터 이 토지를 2018년 2월 8일까지 계속 점유하면서 경작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인 B씨 등은 A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인 C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주점유’ 될 수 없어

매매계약의 당사자 안돼

재판부는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타주점유)고 봐야 하고, 무단점유인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는 것이 종래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로, 계약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유자(매도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어떠한 점유가 계약명의신탁자로서 한 점유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것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반복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B씨 등이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2심은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 8

##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과 열이 인근 점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씨 등이 B건물 관리단과 C씨 등을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청구소송(2022나20038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웃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때에는

인용해야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건물 1층 점포들 가운데 1개 점포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씨는 공유자들과 함께 이 점포를 분양받고 자신들의 점포를 B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돼 있던 정원 형태의 공간까지 옆으로 확장해 해당 공간을 차지하는 불법증축물을 설치했다.

B건물 내 다른 점포 소유자인 C씨 등은 A씨 등이 설치한 불법증축물 위에 관리단이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이용해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설치하고 사용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철제구조물과 함께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며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건물 관리단은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상가 실외기 이전설치에 따른 실외기 고정시설물 설치의 건’을 의결해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을 외벽 부분에 설치한 것”이라며 “외벽 부분은 옆 건물과의 경계 부분으로 건물 전체의 미관을 침해할 여지가 가장 적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다가 경계 부분에는 B건물 전체의 배기 및 급기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일부 조경 공사만 이뤄졌을 뿐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도 아니어서, 외벽 부분은 구분소유자



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곳으로 보인다”며 “실외기는 B건물 소유자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 인근점포 주인 패소 판결

또 “해당 외벽 부분이 아닌 다른 외벽 부분에도 실외기가 일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요구하는 각 실외기와 철체구조물의 철거는 오랫동안 허용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이해와 충돌되는 등 그 보존권의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벽 부분에 설치된 실외기 수가 상당히 적지 않은 소음과 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웃 거주자 소음 등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실외기로 인한 소유권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VI

## 최근 개정 시행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된 중고자동차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리고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대체부품 인증대상에서 자기인증품목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제30조의5제2항 삭제).

나. 자동차의 제작 결함 등과 관련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제6항 신설).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제



47조의4제3항 및 제47조의7제3항 신설, 제47조의8제1항).

- 라.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규정은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에 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57조제3항 및 제58조제3항).
- 마.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함(제57조제3항제2호).
- 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57조의2제2항 및 제80조제5호의4 신설).
- 사.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제6호 신설).

#### ◇ 제정·개정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
4. 변호사

제47조의4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증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증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
3. 그 밖에 교환·환불증재 판정을 위하여 제47조의9에 따른 증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7조의9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증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3. 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제47조의10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를 “위원장에게”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인정하면”을 “인정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또는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7조의10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
-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다.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57조의2 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제3항 중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중 “거짓이나 과장된”을 “부당한”으로 한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4호의2 중 “제57조의2를”을 “제57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80조제5호의3 중 “거짓이나 과장된”을 “부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8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VII

##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 가구 지원

※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 국민주택 특별공급

#### >> 국민주택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서와 다음의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 2018. 5. 8.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표 2].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진단서
4.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5. 건강(의료)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소득입증 서류(해당자에 한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위의 제출서류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18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주택도시기금대출 시 우대

➤ 주택도시기금대출 시 금리 우대

- 다자녀가구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우대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1.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3.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4.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단, 최장 50개월까지만 인정됨)

-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을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2007. 7. 23. 발령·시행) 부칙 제1조 및 제19조).

- 위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 전기요금 할인

###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전기 요금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2022. 3. 1. 발령·시행)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 자동차 취득세 경감

### >>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함)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해 위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1.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 다만, 위의 사유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



## Support for multi-child households

### ※ Support for multi-child households

#### Special provision of national housing

#### >> Special provision of national housing

- A project operator may specially supply constructed and supplied housing to members of a homeless household with three or more children (including a fetus) who are minors as of the date of public notice of resident recruitment, only once on the basis of one-generation, one-family housing within the limit of 10% of the construction volume of the building (Article 40 (1) of the Rules on Housing Supply).
    - Where a person is selected as a resident including a fetus or an adopted child, an application for special supply and the following qualification documents related to childbirth, etc. shall be submitted or the adoption shall be maintained until the time of move-in [Article 40 (3) of the Rules on Housing Supply, the main body of Article 7 (1) and Attached Table 2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Special Supply of Multi-Child Households and Elderly Parents Support Housing].
1.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or an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2. Family relation certificate
  3. A diagnosis paper of pregnancy
  4. Confirmation of subscription account

5. A copy of the health (medical) insurance certificate (limited to the relevant person)
  6. Documents proving income (limited to the relevant person)
- ※ However, in the case of housing of less than 85 m<sup>2</sup> constructed and supplied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or a local public corporation, a copy of the health (medical) insurance card and income certificate among the above documents may not be submitted when the project operator calculates income through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Proviso to Article 6 (1)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Special Supply of Multi-Child Households and Elderly Parents Support Housi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ment No. 2016-873. Issued and enforced on December 13, 2016)].
- Housing of not more than 85 m<sup>2</sup> constructed and supplied by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entities may be specially supplied to members of homeless households with an average monthly income of not more than 120% of the average monthly income (in cases of a household with at least four members including a fetus, referring to the average monthly income per household) per household of urban workers in the previous year (Articles 40 (2) and 18 of the Rules on Housing Supply).
    - The State, local governments,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ocal public corporations, or public housing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6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in which the State, local governments,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or a local public corporation independently or jointly invests in excess of 50% of the total stake



## Favorable interest rates for national housing fund loans

### >> Favorable interest rates for housing fund loans

- If a multi-child household intends to receive a housing city fund loan, it can get preferential loan rates from the Housing City Fund Loan <Source: Website of National Housing and Urban Fund>.

### ※ Other support for multi-child households

## Inclusion of additional participation period of national pension for childbirth

### >> Additional participation period of national pension for childbirth

- When a currently or formerly insured having two or more children acquires entitlement to an old-age pension (including where a person can acquire entitlement to an old-age pension if an additional period should be added to his/her coverage period under this Article), up to 50 months, the following period will be added to the duration of entitlement to the National Pension (Article 19 (1)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Article 2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1. Where the number of children is 2: 12 months
2. Where the number of children is 3: 30 months (12 months for the second child + 18 months for each additional child after the second child)
3. Where the number of children is 4: 48 months (12 months for the second child + 18 months for each additional child after the second child)
4. Where the number of children is five or more 50 months (12 months for

the second child + 18 months for each additional child after the second child: but only for up to 50 months)

- The additional period of national pension coverage for childbirth shall apply to the birth (including adoption) of a second child or more after January 1, 2008, Articles 1 and 19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ct No. 8541. Issued and enforced on July 23, 2007).
- Where both parents are currently or formerly insured, the additional subscription period of the national pension above shall be added to only one of the two parents' subscription periods by agreement between the father and the mother, and when the parents fail to reach an agreement, the additional period shall be equally divided to be added to each parent's subscription period (Article 19 (2) of the National Pension Act).

### Discount on electricity bills

#### >> Discount on electricity bills

-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is offering a discount on electricity bills for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to support the stability of multi-child households [Item A of Subparagraph 4 of Article 67 (6) of the Basic Supply Terms and Condition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ssued and enforced on January 1, 2021)].



## Discount on automobile acquisition tax

### >> Discount on automobile acquisition tax

- Where a person who raises at least three children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erson raising several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based on the record in the family relation register; adopted children and the spouse’s children shall be included, but adopted children shall be excluded from the number of children of biological parents) acquires and registers any of the following motor vehicles until December 31, 2021 for the purpose of raising children, acquisition tax on a motor vehicle shall be exempted for one motor vehicle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reduction or exemption is filed firs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t least one person among the persons raising several children owns any motor vehicle for which acquisition tax is reduced or exempted previously or where the joint registration with a person, other than his/her spouse has been made (Article 22-2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 1. Any of the following passenger motor vehicles

- A. Passenger motor vehicle with a seating capacity between 7 and 10 passengers
- B. Passenger motor vehicle, other than that prescribed in item (This car shall be exempted only if the acquisition tax is less than KRW 1.4 million, and if it exceeds KRW 1.4 million, KRW 1.4 million will be deduced)

#### 2. Van with a seating capacity not exceeding 15 passengers

#### 3. Cargo motor vehicle with a load capacity not exceeding 1 t

4. Two-wheeled motor vehicle with an engine displacement not exceeding 250 cc
  - ※ Where the ownership of a motor vehicle, with acquisition tax reduced or exempted according to the above reasons, is transferred without just grounds, such as death, marriage, emigration, cancelation of a driving license, or other reasons similar thereto,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motor vehicle is registered, the reduced or exempted portion of acquisition tax shall be collected as a penalty (The main body of Article 22-2 (3)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 ※ Provided, That where a multi-child fosterer who has been exempted from acquisition tax for the above reasons transfers ownership of the relevant motor vehicle to the spouse of the relevant multi-child fosterer, the exempted acquisition tax will not be charged (Proviso to Article 22-2 (3)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s Act).



## 对于多子女家庭的支援

※ 对于多子女家庭的支援

### 国民住宅特别供应

#### >> 国民住宅特别供应

- 业主（项目主体）可以将拟建设并供应的住宅在其工程量之10%（以鼓励生育为目的，考虑到各地区生育率、多子女家庭的认购现状等，入住者募集审批人予以承认的则以15%为准）的范围内，以有3名以上未成年人（以入住者募集公告日为准属于未成年人）子女（包括胎儿）的无住宅住户成员为对象，以“一户一宅”为准提供特别供应，但仅限一次。（《住宅供应相关规则》第40条第1款）

· 包括胎儿或领养子女在内，被选定为入住者的，应提交特别供应申请书及下列可证明资格的资料，并附上与分娩等有关的资料，或维持领养关系直至入住为止。（《住宅供应相关规则》第40条第2款、《对于多子女家庭及老父母赡养家庭的住宅特别供应运用指南》第6条第1款本文及附表2）

1. 居民户口簿副本或抄本
2. 家族关系证明书
3. 怀孕诊断证明书
4. 认购折加入确认书
5. 健康（医疗）保险证副本（如有）
6. 收入证明资料（如有）

- ※ 但对于国家、地方自治团体、韩国土地住宅公社、地方公社作为项目主体建设并供应的面积85平方米以下住宅，由项目主体通过社会保障信息系统计算收入（所得）情况的，则无需提交上述资料中健康（医疗）保险证副本及收入证明资料。（《对于多子女家庭及老父母赡养家庭的住宅特别供应运用指南》（国土交通部告示第2016-873号，2016年12月13日发布·施行）第6条第1款但书）
- 对于由下列之一的项目主体建设并供应的面积85平方米以下住宅，住户月收入（包括无住宅住户成员的收入）小于前一年城市劳动者每户月收入（包括胎儿，家庭成员为4名以上的住户则是指每户每成员月收入）之120%的无住宅住户成员，则可以享受特别供应。（《住宅供应相关规则》第40条第2款及第18条）
  - 国家、地方自治团体、韩国土地住宅公社或地方公社，地方公社或依据《公共住宅特别法施行令》第6条第1款的公共住宅商户
  - 由国家、地方自治团体、韩国土地住宅公社或地方公社单独或共同出资（占总股份50%以上）的房地产投资公司

### 从住宅城市基金贷款时享受优惠

#### >> 从住宅城市基金贷款时享受优惠

- 多子女家庭欲从住宅城市基金贷款的，可以从住宅城市基金享受贷款利率优惠。《来源：住宅城市基金官网》

#### ※ 对于多子女家庭的其他支援

### 追加计算关于因分娩的国民年金投保时间

#### >> 追加关于因分娩的国民年金投保时间



- 曾经或现在属于国民年金投保人且有2名以上子女者取得老龄年金领取资格的（包括依据《国民年金法》第19条规定将一定期间加算到投保期间时可取得老龄年金领取资格的情形），在最长不超过50个月的范围内，将下列期间加算到国民年金投保期间之中。（《国民年金法》第19条第1款及《国民年金法施行令》第25条第1款）
  1. 有2名子女的：12个月
  2. 有3名子女的：30个月（相当于2名子女的12个月 + 从第三胎开始，每超过1名再加上18个月）
  3. 有4名子女的：48个月（相当于2名子女的12个月 + 从第三胎开始，每超过1名再加上18个月）
  4. 有5名以上子女的：50个月（相当于2名子女的12个月 + 从第三胎开始，每超过1名再加上18个月，但最长不得超过50个月）
- 2008年1月1日之后分娩（包括领养）的二胎以上的子女开始追加计算国民年金投保时间。[《国民年金法》（法律第8541号），2007.7.23.发令·施行）附则第1条及第19条]
- 就上述合计期间而言，父母两个人都曾经或现在属于国民年金投保人的，经父母协商一致，加算到其中一方的投保期间之中；协商不成的，则将其均等分配后分别加算到双方各自的投保期间。（《国民年金法》第19条第2款）

## 电费优惠

### >> 电费优惠

- 韩国电力公社以支持多子女家庭的生活稳定为目的，以有2名子女的家庭为对象提供电费减免支援（电费优惠）。[《基本供电条款》（韩国电力公社条款2021年6月25日发布·施行）第67条第6款第4项第1目]

## 减免汽车购置税

### >> 汽车购置税

- 对于养育3名以上未满18岁子女（以家庭关系登记簿的记录为准，包括双方及配偶的子女，领养子女不包含在亲生父母子女数中）者（以下称“多子女养育者”），以养育为目的，截至2021年12月31日为止所购置并登记在册的汽车，对下列汽车中优先申请减免的1辆汽车免除购置税。但是，多子女养育者当中1名以上已拥有之前获得见面的汽车，或与配偶之外的第三人共同登记时，不在减免范围之内。（《地方税特例限制法》第22条之2第1款）

#### 1. 符合下列条件之一的乘用车：

- i) 乘员定额为7名以上-10名以下的乘用车；
- ii) 除上述i)之外的乘用车（对于该等乘用车，只有购置税低于140万韩元方可得以免除，而超过140万韩元的，只减免140万韩元。）

#### 2. 乘员定额为15名以下的乘用车

#### 3. 最大载重量小于1吨的货车

#### 4. 排量250cc以下的摩托车

※ 因有上述情形之一而得到购置税减免者，自汽车登记之日起1年内非因死亡、结婚、海外移民、驾驶证吊销及其他类似原因而将汽车所有权转让给别人的，则追缴已减免的购置税。（《地方税特例限制法》第22条之2第3款本文）

※ 但如有上述情形之一而得到购置税减免的多子女养育者，将该等汽车的所有权转让给配偶的，则不会追缴已减免的购置税。（《地方税特例限制法》第22条之2第3款但书）



## Hỗ trợ gia đình đông con

※ Hỗ trợ gia đình đông con

### Cấp nhà ở quốc dân đặc biệt

#### ➤ Cấp nhà ở quốc dân đặc biệt

- Chủ đầu tư dự án có thể xây dựng và cấp đặc biệt cho 1 hộ gia đình 1 căn nhà giới hạn trong 1 lần cho thành viên của những gia đình không có nhà ở và hiện có 3 con trong độ tuổi vị thành viên trở lên (bao gồm cả đứa con đang mang thai trong bụng) vào ngày ban hành tìm người đến ở trong phạm vi 10% lượng xây dựng nhà ở (15%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có quyền phê duyệt thông báo tìm người đến ở chấp thuận, trong đó cân nhắc đến tỷ lệ sinh sản, tình trạng cam kết của gia đình nhiều con theo từng địa phương với mục đích kích lệ sinh đẻ (Khoản 1 Điều 40 「Quy tắc cấp nhà ở」).
- Trường hợp được lựa chọn là người vào ở với lý do trên bao gồm cả con nuôi và con đang mang thai trong bụng, phải nộp đơn xin cấp đặc biệt và các giấy tờ liên quan đến sinh đẻ để làm tài liệu chứng minh tư cách, hoặc phải duy trì tình trạng nhận con nuôi cho đến khi chuyển đến ở [Khoản 3 Điều 40 「Quy tắc về cấp nhà ở」, Nội dung chính Khoản 1 Điều 7 và Phụ lục 2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nhà ở đặc biệt cho hộ gia đình đông con và phụng dưỡng cha mẹ cao tuổi」 (Bộ Đất đai, Cơ sở hạ tầng và Giao thông ban hành số 2018-269, ngày 5.8.2018)].

1. Bản trích lục hoặc bản sao y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2.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3. Giấy chẩn đoán mang thai

4. Giấy xác nhận tham gia sổ tài khoản cam kết
  5. Bản sao giấy chứng nhận bảo hiểm sức khỏe (y tế) (giới hạn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liên quan)
  6. Giấy tờ chứng minh thu nhập (giới hạn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liên quan)
- ※ Tuy nhiên, trường hợp là nhà ở dưới 85m<sup>2</sup> do nhà nước, đoàn thể tự trị địa phương, Tổng công ty đất đai và nhà ở Hàn Quốc, doanh nghiệp nhà nước địa phương là chủ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và cung cấp, khi chủ dự án tính toán thu nhập thông qua hệ thống thông tin bảo đảm xã hội thì trong số các giấy tờ cần nộp ở trên, có thể không cần nộp các giấy tờ chứng minh thu nhập và bản sao thẻ bảo hiểm sức khỏe (y tế) [Quy định chi tiết Khoản 1 Điều 6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nhà ở đặc biệt cho hộ gia đình đông con và phụng dưỡng cha mẹ cao tuổi」 (Thông báo của Bộ Địa chính và Giao thông số 2016-873, ban hành và thực hiện từ ngày 13. 12. 2016.)].
- Nhà ở dưới 85m<sup>2</sup> được xây dựng và cung cấp bởi các công ty sau có thể được cấp đặc biệt cho thành viên của hộ gia đình không có nhà ở với điều kiện mức thu nhập bình quân tháng (thu nhập của toàn bộ thành viên trong hộ gia đình) của hộ gia đình này dưới 120% mức thu nhập bình quân tháng tính theo hộ gia đình người lao động của khu vực đô thị năm trước đó (đối với hộ gia đình trên 4 người thì nghĩa là thu nhập bình quân tháng trên mỗi hộ theo từng thành viên của hộ gia đình đó) (Điều 18 và Khoản 2 Điều 40 「Quy tắc về cấp nhà ở」)
  - Nhà nước, đoàn thể tự trị địa phương, Tổng công ty đất đai và nhà ở Hàn Quốc, doanh nghiệp nhà nước địa phương, hoặc doanh nghiệp nhà ở công cộng theo Khoản 1 Điều 6 「Thông tư thi hành Luật đặc biệt về nhà ở công cộng」
  - Công ty đầu tư bất động sản do Nhà nước, đoàn thể tự trị địa phương, Tổng công ty đất đai và nhà ở Hàn Quốc hoặc doanh nghiệp nhà nước



địa phương đầu tư vốn chung hoặc riêng vượt quá 50% tổng số cổ phần

Ưu đãi khi vay tiền từ Quỹ nhà ở và đô thị

➤➤ Ưu đãi lãi suất khi vay tiền từ Quỹ nhà ở và đô thị

- Hộ gia đình có nhiều con được hưởng lãi suất ưu đãi từ Quỹ Nhà ở Quốc dân.

※ Hỗ trợ khác dành cho hộ gia đình đông con

Bổ sung giai đoạn mang thai vào giai đoạn Hưu trí Quốc dân

➤➤ Thêm giai đoạn mang thai vào giai đoạn Hưu trí Quốc dân

- Trường hợp người đang hoặc đã từng tham gia bảo hiểm hưu trí quốc dân có từ 2 con trở lên và đã có quyền thụ hưởng lương hưu dành cho người cao tuổi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có thể nhận quyền thụ hưởng lương hưu dành cho người cao tuổi nếu tính gộp thêm cả khoảng thời gian tham gia theo Điều 19 「Luật hưu trí quốc dân」) thì có thể được tính thêm khoảng thời gian sau đây vào thời gian tham gia bảo hiểm hưu trí quốc dân với mức giới hạn dài nhất là 50 tháng (Khoản 1 Điều 19 「Luật hưu trí quốc dân」 và Khoản 1 Điều 25 「Thông tư thi hành Luật hưu trí quốc dân」)

1. Trường hợp có 2 con: 12 tháng

2. Trường hợp có 3 con: 30 tháng (12 tháng do được công nhận về đứa con thứ hai + 18 tháng cho mỗi người con vượt quá mức con thứ hai)

3. Trường hợp có 4 con: 48 tháng (12 tháng do được công nhận về đứa con thứ hai + 18 tháng cho mỗi người con vượt quá mức con thứ hai)
  4. Trường hợp có 5 con trở lên: 50 tháng (12 tháng do được công nhận về đứa con thứ hai + 18 tháng cho mỗi người con vượt quá mức con thứ hai. Tuy nhiên, chỉ được công nhận dài nhất là 50 tháng)
- Bổ sung giai đoạn mang thai vào giai đoạn Hưu trí Quốc dân áp dụng cho người hưởng bảo hiểm có con thứ hai (bao gồm cả con nuôi) từ sau 01/01/2008 [Điều 1 và 19 Quy tắc Bổ sung 「Luật hưu trí quốc dân」] (Luật số 8541, ban hành và thi hành từ ngày 23/7/2007)].
  - Trong trường hợp cha mẹ đều đang hoặc đã từng tham gia bảo hiểm hưu trí quốc dân thì thời gian tham gia bảo hiểm hưu trí quốc dân được thêm vào như ở bên trên sẽ được tính gộp vào khoảng thời gian tham gia của một trong hai người tùy theo thỏa thuận, nếu không có thỏa thuận thì khoảng thời gian này sẽ được chia đều và thêm vào thời gian tham gia của cả hai bên (Khoản 2 Điều 19 「Luật hưu trí quốc dân」).

## Giảm giá tiền điện

### >> Giảm giá tiền điện

- Tổng công ty điện lực Hàn Quốc đang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giảm tiền điện cho các hộ gia đình có từ 3 con trở lên nhằm hỗ trợ cho sự ổn định đời sống sinh hoạt của các gia đình đông con [Mục a Điểm 4 Khoản 6 Điều 67「Điều khoản cung cấp cơ bản」(Điều khoản quy định của Tổng công ty điện lực Hàn Quốc được ban hành và thi hành từ ngày 6. 25. 2021)].



## Giảm bớt thuế sở hữu ô tô

### >> Giảm bớt thuế sở hữu ô tô

- Chính phủ sẽ miễn thuế sở hữu cho phương tiện sở hữu và đăng ký bởi một người đang chăm 3 con dưới 18 tuổi (dựa trên đăng ký quan hệ gia đình, bao gồm cả con nuôi và con riêng của vợ/chồng. Con nuôi không được tính vào số lượng con của bố mẹ đẻ) (sau đây gọi tắt là người nuôi dạy nhiều con) vì mục đích chăm sóc con. Tuy nhiên, việc miễn thuế này có thể không được áp dụng nếu vợ/chồng đã được miễn thuế phương tiện khác hoặc phương tiện được đồng đăng ký bởi người không phải vợ/chồng (Khoản 1 Điều 22.2 「Luật hạn chế đặc biệt thuế địa phương」).

#### 1. Xe hơi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 a. Xe hơi chở được số người từ 7 đến 10
- b. Xe hơi khác ngoại trừ mục a (Đối với các loại xe này, chỉ miễn giảm cho trường hợp có thuế sở hữu dưới 1,4 triệu won, nếu vượt quá 1,4 triệu won thì sẽ được trừ đi 1,4 triệu won)

#### 2. Xe ô tô chở được dưới 15 người

#### 3. Xe chở hàng với trọng tải tối đa dưới 1 tấn

#### 4. Xe 2 bánh có lượng khí thải dưới 250cc

- ※ Trường hợp người được miễn giảm thuế sở hữu ô tô vì các lý do trên chuyển quyền sở hữu xe này mà không có các lý do như bị thiệt mạng, kết hôn, di cư ra nước ngoài, hủy bằng lái xe và các lý do tương tự khác trong vòng 1 năm kể từ ngày đăng ký xe, thì sẽ bị truy thu khoản thuế sở hữu đã được miễn giảm (Nội dung chính Khoản 3 Điều 22.2 「Luật hạn chế đặc biệt thuế địa phương」)

- ※ Tuy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nuôi dưỡng nhiều con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thuế sở hữu vì các lý do trên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ở hữu xe này cho người bạn đời nuôi dưỡng nhiều con thì sẽ không bị truy thu tiền thuế sở hữu (Quy định chi tiết Khoản 3 Điều 22.2 「Luật hạn chế đặc biệt thuế địa phương」)

# V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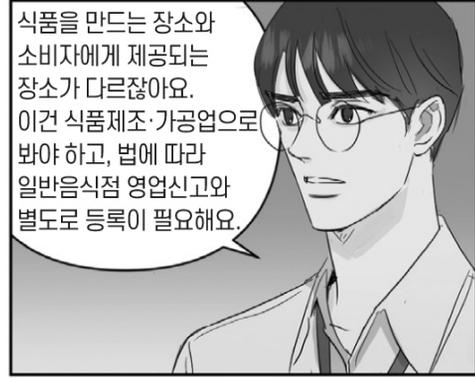
## 법제처 법나들이



### 사장은 어려워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할까요?



**정답** ▶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